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29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장동혁의원 등 17인
2. 발의일 : 2024. 11. 20.
3. 회부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예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 내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사법원법」 제43조 및 제44조¹⁾의 군사법경찰관 범위에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의 직무범위에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죄²⁾”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43조제5호 및 제44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3조(군사법경찰관)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u>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 ----- -----. 1. · 2. (현행과 같음) 4. <u>제43조제5호에 규정된 사람: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죄</u>

1)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

□ 개정안의 「군사법원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조항은 2020. 12. 15. 개정 전 「군사법원법」에서 제43조 제3호, 제44조 제3호³⁾에 각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논란 등을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이하 “군사경찰관”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2020. 12. 15.>

4. 검찰수사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삭제 <2020. 12. 15.>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05730,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의2.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3) 「군사법원법」(2020. 12. 15. 법률 제 17646호로 개정 전)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3.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사람: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 17646호로 개정 전)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함께 개정된 내용임.

○ 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정보활동 업무로만 한정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은 기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⁴⁾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일반 사법경찰에 이첩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역량 저하 및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⁵⁾되는바,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포함함으로써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2205730호)(이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2024.11.21.)되어 있음.

□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은 국가

4) 전부개정 당시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

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2205730호) 제안이유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소속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국방부는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30)의 수사권 신설과 연계하여, 수사권 신설을 전제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등 관련 내용을 타법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전문성·고도의 보안 필요성 등 안보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경우 해외 방첩망이나 국제정보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안보수사활동·비밀활동 경험이 거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경찰 수사권만으로는 안보수사 대응역량이 부족하며, 국내외 다수 휴민트(인적 정보자산), 테킨트(기술정보자산) 등 국정원의 조직, 시설 및 수사 노하우 등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대공수사 역량 약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의 사장 등을 우려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3